

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공고

(선거관리 규정 제31조, 제32조, 제38조, 제39조)

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 및 제38조를 위반하는 사항(사전선거운동)에 대해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(2026. 04. 16.)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였으며, 아래와 같이 결정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대상자

- 유재민 대의원

2. 선관위 결정 사항

- 대상자에 대한 1차 경고 및 그 사실의 공고
- ※ 근거규정 : 선거관리 규정 제31조, 제32조, 제38조, 제39조

3. 사유

- 대상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제5기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단체 문자메시지(이하 '문자메시지')를 발송함
- 대상자가 발송한 단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관리 규정 제31조에서 정의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며,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선거관리 규정 제32조와 제3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(사전선거운동)에 해당됨

4. 조치사항

- 가. 대상자에 대한 1차 서면 경고, 사전선거운동의 즉시 중단 요청
- 나. 본 선관위 결정사항의 공고
 - 현장(협회 사무소 게시판) 게시
 -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

2026. 04. 17.

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
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철한

